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가.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임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.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함.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3항, 제5조제1항, 제7조)

□ 참고자료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도법」 제19조의2의 규정”을 “「수도법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수도법」 제19조의2제1항”을 “「수도법」 제3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수도법」 제30조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「수도법」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</p> <p>2. 기타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수도법」 제30조제1항----- -----</p> <p>2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소비자보호단체·환경단체·여성단체 등의 장 등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직무) ① ----- ----- <u>총괄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의안건 배부)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7조(회의안건 배부) ----- -- <u>부치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수도법</p> <p>제30조 (수돗물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<p>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